

## 지방환경관서의 주요 환경정책

윤승준

환경부

### Major Environmental Policies and Programs of Reg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Offices

Seung-Joon Yoon

Ministry of Environment

#### 1. 서 론

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8개 지방환경관서를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2007.3월 현재 총 정원 1,744명), 산하 기관으로는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있다. 또한 환경정책 연구와 정책개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환경부는 '07년 3월 현재 2실 5국 4관 30과 1기획관 8담당관(정원 4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환경법령의 제·개정, 환경관련 제도 도입 등 국가환경관리를 위한 환경행정 기본체계의 확립, ②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③각종 규제기준의 설정, ④지방환경관서 및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⑤국가간 환경보전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관서('07. 3월 현재 정원 820명)로는 4대강 수계 유역관리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및 4개 환경감시단,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 및 8개 환경출장소(부산, 울산, 구미, 포항, 청주, 여수, 경인, 춘천)가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있다.

본 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서 수립한 환경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지방환경관서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 그리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 2. 지방환경관서의 역할

##### 2.1. 지방환경청

지방환경청에서는 ①자치단체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②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평가 ③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⑤자연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⑥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테러·사고 대책, ⑦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관리, ⑧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⑨환경오염원 조사 및 환경오염도 측정·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2. 유역환경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유역환경청은 지방환경청의 업무 이외에도 해당 지역내의 유역관리를 위한 수계관리위원회 및 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전용수도사업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수계관리특별법에 의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및 사법경찰 관련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2.3.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은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와 자동차의 47%가 집중되어 있어 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은 국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2.)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 법에 근거하여 사전예방적이고도 광역적인 수도권 대기관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05.1.1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신설하게 되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05.11)"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집행업무의 총괄, 중앙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기본계획"과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자치단체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저공해

E-mail: yoonsj56@hanmail.net

Tel: 031-400-4030

Fax: 031-407-0697

자동차 보급,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z Compounds, VOC) 및 소형 소각시설 관리, 기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 수립·시행하고 있다.

### 3. 주요 환경정책

#### 3.1. 유역관리

##### 3.1.1. 중권역 물환경관리

그간 추진해 온 “4대 강물관리종합대책”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확보를 원하는 국민들의 변화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06.9.25. BOD 등 오염물질 관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탈피하여 '15년까지 향후 10년간(2006~2015)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떡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Table 1과 같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①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②전체 수계의 위해성 관리체계 강화, ③수질환경 기준 및 평가방법의 선진화, ④호소·연안·하구지역의 물환경정책 강화, ⑤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및 정착, ⑥비점오염원과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⑦물 순환구조 개선 및 수요관리 강화, ⑧환경기초시설 투자 합리화 및 효율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은 Table 2와 같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에 따라 중권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라 중권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5개년 실행계획으로서, 해당 중권역에 대한 물환경을 총괄하는 계획이며, 추진성과를 다시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연동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권역계획은 기본계획에 제시된 물환경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물환경개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합리적인 우선순위 조정과 재원배분을 통

**Table 1. Major indicators of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rograms**

지표 항목	2005('04)	2015
○ 좋은 물(하천/호수) 비율(840개 구간)	76%	85%
- ‘매우 좋은 물’(Ia)	22%	40%
- ‘좋은 물’(Ib)	34%	→ 32%
- ‘약간 좋은 물’(II)	20%	13%
○ 훼손된 하천구간 자연형 복원 비율	1%	→ 25%
○ 수변생태벨트(REB) 조성을(수변지역 매입토지 대비)	0%	→ 30%
○ 국민건강보호 기준(항목)	9개	→ 30개
-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항목)	17개	→ 35개
○ 하수도보급률	81%	→ 90%
- 상수원 주변 하수도보급률	30%	→ 70%

**Table 2.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programs for various river basins**

구 분	계 획 명 칭	계획 수립자	계획 기간
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환경부장관	10년
중권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환경청장(유역·지방)	5년
소권역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시장·군수·구청장	5년

대 권 역		중 권 역	소 권 역
권역 설명	수계영향권 규모가 큰 4대강 인접수계	물관리 정보공통유역도의 중권역	물관리 정보공통유역도의 표준유역 기준
권역 개수	4개	117개	840개
	한강	30	289
	낙동강	33	266
	금강	22	141
	영산강·섬진강	32	144

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물관리 대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 3.1.2.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역구성원간의 책임공유를 통하여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용수이용 목적에 맞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 유역관리제도의 하나이다.

기존의 농도규제로는 중·하류에 밀집된 인구 및 산업시설을 갖고 있는 한강, 낙동강 등에 대해 근본적인 수질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오염부하량의 양적 증가를 적정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이 되었고, 비록 자율규정이긴 하지만 한강유역으로 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Table 3은 오염총량관리제와 농도규제 방식의 특징을 열거한 것이다.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기

**Table 3. Major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ion and total load-based control**

구분	농도규제	총량관리
규제 방식	○ 폐수중 오염물질농도를 규제 *농도(C)= 오염부하량(L)/폐수량(Q)	○ 폐수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 농도(C)×폐수량(Q)
특징	○ 집행 용이 ○ 늘어나는 오염총량 통제불가	○ 시행기반구축 어려움 ○ 오염물질총량 통제가능

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등을 정한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작성한다. 둘째, 전문가의 조사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수질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의 관할구역내의 수계별 목표수질은 시·도지사가 설정한다. 셋째,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유역별 및 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한다. 넷째,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서 할당된 부하량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부하량을 개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관리한다. 다섯째,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별오염원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게 총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되며, 할당부하량 초과지역 또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한강수계법령을 개정하여 현재 임의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강수계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태화강·안성천 등 전(全)수계 및 마산만 등 연안·하구까지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오염총량관리(‘11~‘15)를 위해 총량관리 대상항목을 현행 BOD에서 T-P 등을 추가하고,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 3.2.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제도

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는 환경성 평가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두 제도는 모두 개발계획 및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분

석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전에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인데 반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교통및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 실시 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고 있다.

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계획 입안단계에서 개발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추진이 확정된 개발사업 중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인 것이다(Table 4).

### 3.3. 자연경관영향협의 제도

자연경관 보전을 무시한 국토개발 관행으로 해변, 강변 등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숙박업소, 음식점, 아파트 등이 난립되면서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자연경관영향협의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동 제도의 개요는 Table 5와 같다.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와 「자연경관심의위원회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자연경관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조경, 도시계획, 건축, 환경, 농림, 산림자원, 생태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 축,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경관변화 예측 및 평가, 경관영향 저감방안 등을 심의하는데 경관심의 의견의 법적인 지위(효력)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과 동일하다.

Table 4. Comparison of prior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구 분	사전환경성검토(PREI)	환경영향평가(EIA)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법령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주요기능	○ 개발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필요시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	○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저감방안 강구
협의시기	○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전, 개발계획 인허가 전	○ 계획이 확정된 이후 실시계획 승인 전
대상사업	○ 개발 관련 행정계획(48종) - 환경영향기본법(17), 개별법(31) ○ 보전용도지역내 개발사업(22종) ※ 확정되지 않은 계획 및 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17개 분야 63개 사업) ※ 상위 단계에서 계획이 확정된 사업
협의요청기관	○ 행정계획 수립기관,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	○ 사업 승인기관
의견수렴	○ 미실시	○ 의견수렴(공고, 공람, 설명회, 공청회)
협의기간	○ 30일 이내(10일 연장)	○ 45일 이내(15일 연장)
협의실적	○ ‘00.8~‘04년까지 12,948건 협의	○ ‘82~‘04년까지 2,829건 협의

**Table 5.** Prior review of deterioration on natural landscapes

구 분	자연경관영향 협의	
	지방환경관서 심의	지자체 검토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전지역(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주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등</li> <li>○ 일반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지역주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 등</li> <li>○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사업은 제외</li> </ul>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같이 진행하되, 별도 심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절차와 같이 진행</li> </ul>
협의요청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개발사업의 인·허가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li> </ul>
협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환경성 검토 요청시</li> <li>○ 환경영향평가협의시(본 평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의 인·허가시</li> </ul>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환경성 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 하되 경관분야를 별도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서류 제출시, 자연경관 현황사진을 같이 제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li> </ul>
자연경관영향검토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경관 현황</li> <li>○ 자연경관영향 분석·예측</li> <li>○ 지감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경관 현황</li> <li>○ 자연경관 훼손여부</li> <li>○ 주변경관과의 조화성</li> </ul>
심의·검토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지방환경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자연환경담당부서(지자체 사정에 따라 인·허가부서 또는 도시계획부서)</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45일), 사전환경성 검토(30일) 기간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내</li> </ul>

### 3.4. 자연환경보전

#### 3.4.1.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환경부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자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생태계의 표본지역을 환경부장관(육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이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05년말 현재 국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낙동강하구 등 14개지역 255.604 km<sup>2</sup>(환경부 지정 10개소 185.231 km<sup>2</sup>)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광양 백운산 등 13개지역(37.941 km<sup>2</sup>) 등 총 27개 지역에 293.545 km<sup>2</sup>이다.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역/지방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관리기본계획에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특별관리, 자연자산관리·생태계보전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촉진 등이 포함된다.

생태계보전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및 관리(환경청), 출입제한(환경청) 등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유지 매입(지자체), 주민지원(환경부 지원) 등을 통하여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

#### 3.4.2. 생태계변화 관찰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생태계 변화내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관찰 대상지역 지정 및 범위는 생물다

양성이 풍부한 지역,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도래지,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선정한다.

해당 지역안의 토지이용 실태와 동식물의 변화상태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하여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관련 전문가, 현지주민, 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켜 외형적 서식지 변화와 거시적인 측면에서 동식물의 변화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찰지역 및 그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의 형상변경,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실태와 환경오염 실태, 변화 관찰 지역 및 그 인접지역의 오염 상태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 3.5.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0만여 종에 이르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화학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었거나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여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 저감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및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2-166호)」에 따라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 중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섬유제품제조업 등 36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화학물질의(388종) 연간 취급량(I 그룹: 1톤, II 그룹: 10톤 이상)과 대기, 수계, 토양 등 환경으로 직접 배출된 양 그리고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이동량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취급중인 화학물질별 유통실태를 파악, 인체 및 환경 위해성 평가체계 확립과 관리대상 우선순위 선정기준 설정 등을 통해 환경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화학물질에 대한 유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업장 및 37개 업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연간 화학물질별 제조, 사용, 판매, 보관 등 총 유통현황을 4년마다 조사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3.6. 폐기물 관리

#### 3.6.1. 지정폐기물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을 1일 300 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그리고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 조직의 적출물과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지정폐기물, Table 6)을 말하며, ‘생활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중 사업장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현재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제조업 중 배출시설이 설치되고,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지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방환경관서에서, 이외의 지정폐기물과 생활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43조(보고·검사등)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583호, '04.9.11)」에 따라 업소별로 관리 등급 정해 차등 관리하고 있다. 다만, 환경친화기업, 자율환경관리협약체결 사업장 등은 단속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3.6.2. 감염성 폐기물

‘감염성폐기물’은 인체조직물, 탈지면 등 의료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Table 7),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하여 2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로 관리하였으나, '00. 8.9.부터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하게 되었다.

감염성 폐기물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환자 10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9개 이상 진료과목 등의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관리하고,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배출업소와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3.7. 기타

이 밖에도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정수장 등 관리실태 점검,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도·감독, 환경오염측정망 운영 및 오염물질 시험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지역특성에 맞게 수행하고 있다.

## 4. 맺음말

유역/지방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에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한 이후에 수질오염총량

Table 6. Classification of hazardous wastes

종류별	분류기준
폐산·폐알카리	액상중 Ph 2.0 이하, 12.5 이상
폐유기용제	할로겐족(디클로로메탄 등 17개 물질), 기타유기용제
폐석면	스레트 등 고형화 된 경우 제외
PCB함유 폐기물	액상중 2 mg/L(용출: 0.0032 mg/L) 이상
폐페인트 및 락카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경우를 포함
폐합성수지·고무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경우
감염성폐기물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경우

Table 7. Types of hospital wastes

종류별	분류기준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 동물의 사체(동물병원에 한함) -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분비물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가 묻은 탈지면, 봉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에 사용된 배양용기, 혈액병, 폐장갑, 폐혈액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칼날, 한방 침, 치과용 침
혼합감염성폐기물	- 상기 감염성폐기물이 2이상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

관리, 환경성평가,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보전, 유해물질 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종래의 관 주도 및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수용체 중심(receptor-oriented)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1. 환경백서(2006).
2.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역/지방 환경청 2007 업무계획.
3.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4. 수질환경보전법.
5. 환경정책기본법.
6. 환경·교통및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7. 자연환경법.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9.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2-166호).
10. 폐기물관리법.
1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583호, 2004.9.11).